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보도자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1004호 배포일시 : 2011.11.3(목)

문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

제 목 : “미국 투자자가 소송 걸면 한국 정부 거부 못해” 제하의 경향신문 기사(11.3) 관련

“미국 투자자가 소송 걸면 한국 정부 거부 못해” 제하 11.3(목) 경향신문 기사(김지환 기자)에 대한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사전동의조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더욱 강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사실관계)

- ISD 사전동의조항은 중재관할에 대한 피청구국의 사전적·일반적 동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투자협정의 핵심적 규정임(한·미 FTA의 경우 제11.17조).
- 당사국 재량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ISD 중재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것은 ISD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최근 체결되는 FTA나 투자보장협정에 이러한 사전동의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 ISD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6개의 우리 FTA에 모두 포함
 - 또한, 한·중 투자보장협정(1992.12.4 발효)을 2007년 개정하여 사전 동의 규정을 삽입

(기사내용)

- “한국이 체결한 조약 96개 가운데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포함된 조약은 89개였다. 이 중 한·미 FTA와 같이 사전동의조항이 포함된 조약은 31개였다. 반면 사전동의조항이 없고 단순하게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약은 10개였다.”

(사실관계)

- 2011.9.1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중인 투자 관련 협정 가운데 FTA 7개 중 6개, BIT 85개 중 81개에 ISD가 규정되어 있는데(총 87개), 이 중 사전동의규정은 모두 70개(무조건 동의규정 30개, 동의의무규정 40개)에 이른다.
 - ‘무조건 동의규정’은 협정으로 동의의 의사표시가 완성되는 경우로서 규정 자체에 의하여 관할이 생기고, ‘동의의무규정’은 별개의 서면동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정 위반을 구성하게 되므로, 양자는 실제 법적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

(기사내용)

- “투자 유치국 정부는 자국 내 투자자가 특정 분쟁을 국제중재로 끌고 갈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

- ISD 분쟁해결절차가 도입된 이상, 제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정부의 정당한 비차별적 정책 조치에 대하여는 ISD 제기 근거가 없으므로, 중재에 소요되는 기간(2~3년)과 비용을 감안할 때,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ISD에 회부하는 식의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됨.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